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2년 5월 4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사명 : 노아투자일임주식회사

(영문명) Noah Investment Management Co., Ltd

(홈페이지) <http://www.noaham.com>

본점소재지 :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, 102동 1903호

(전화) 070-7777-3225

대표이사 : 손종현

담당책임자 : (직책) 대표이사

(성명) 손종현 (전화) 070-7777-3225

작성자 : (직책) 대표이사

(성명) 손종현 (전화) 070-7777-3225

제출이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 11-11-1 호)

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

1. 일시	2022.05.27 (금) 10:00
2. 장소	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, 102 동 1903 호 당사 회의실
3. 의안 주요내용	제 1 호 의안: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의 건 제 2 호 의안: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 제 3 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 제 3-1 호: 사내이사 손종현 중임(예선)의 건 제 4 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 제 4-1 호: 비상근 감사 정세인 중임(예선)의 건 제 5 호 의안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: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2022.05.04 (수) 10:00
-사외이사 참석(명)	-
참석여부 불참(명)	-
-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	참석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없음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 1) 상법,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
신고한다.
- 주 2) “의안 주요내용”은 의안 안건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,
사업목적변경, 이사.사외이사의 선임,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포함)선임,
집중투표제 도입.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.
- 주 3) 임원선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에 “상근이사 ○명, 비상근이사 ○명,
사외이사 ○명, 감사위원 ○명, 감사 ○명 선임” 등의 방식으로 임원
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, 임원해임의 경우 “의안 주요내용”에
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,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주 4)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란에 기재한다.
- 주 5) “신규선임여부”는 “신규선임” 또는 “재선임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 6) “주요경력”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
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- 주 7) “현직”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,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(상근·비상근이사, 사외이사, 감사위원, 감사)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,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·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.
- 주 8) 【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】의 “사외이사 여부”는 “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” 또는 “사외이사인 감사위원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 9) 【감사선임 세부내역】의 “상근여부”는 “상근” 또는 “비상근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 10) 【집중투표제 도입·배제 세부내역】은 도입하는 경우 “변경 전”에 “배제”, “변경 후”에 “적용”을 기재하고,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.
- 주 11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 12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)